**내용증명**

**1. 수신인**

가. 업 체 명 : ㈜아성다이소

나. 사업자등록번호 : 213-81-52063

다. 주 소 :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

라. 대 표 자 : 박정부/신호섭

**2. 발신인**

가. 업 체 명 : ㈜홈앤하우스

나. 사업자등록번호 : 126-86-63392

다. 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리더스빌딩 508호

라. 대 표 자 : 오병길

**제 목 : 옷장안 선반행거 판매중지 및 디자인권 침해중지 요청의 건**

1.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㈜홈앤하우스 대표자 오병길은 2015.06.01 출원번호 30-2015-0027400호로 이 사건의 제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하였습니다(참고자료1)
3.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사가 이 사건 제품과 거의 동일한 옷장안 선반행거를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(참고자료2)
4. 귀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행위로서, 디자인보호법 제 220조 제 1항에 따라 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”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.
5. 이에 발신인은 귀사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
6. 옷장안 선반행거 등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즉각적인 판매중지.
7. 옷장안 선반행거 등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즉각적인 회수.
8. 옷장안 선반행거 등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 내역 제출.
9. 옷장안 선반행거 등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제출
10. 본 발신인은 2020.09.30까지 상기 사항을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, 만일 위 기한까지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사에 대하여 일체의 민·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자료

참고자료1. 이 사건 제품의 디자인권 등록 내역서

참고자료2. 다이소 매장 실 구매영수증 및 전시이미지

**2020.09.10**

**㈜ 홈앤하우스**

오병길

참고자료2

